##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(강기윤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010

발의연월일: 2020. 12. 1.

발 의 자: 강기윤·김희국·이명수

윤영석 · 김예지 · 박성중

김태호 · 김희곤 · 이종성

김도읍 · 최형두 의원

(11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 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,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 표지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 유치원과 어린이집 부근 금연구역의 범위가 좁아 영유아가 여전히 간접흡연 피해에 노출되고 있으므로 금연구역의 범위를 확대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금연구역의 범위를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의 구역으로 확대함으로써 영유아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(안 제9조제6항제1호 및 제2호).

법률 제 호

###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민건강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9조제6항제1호 및 제2호 중 "10미터"를 각각 "50미터"로 한다.

#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조(금연을 위한 조치) ① ~	제9조(금연을 위한 조치) ① ~
⑤ (생 략)	⑤ (현행과 같음)
⑥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	6
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흡연으	
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	
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	
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	
역으로 지정하고, 금연구역임을	
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	
한다. 이 경우 금연구역 안내표	<u>.</u>
지 설치 방법 등에 필요한 사	
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	<u>.</u>
1. 「유아교육법」에 따른 유치	1
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	<u>5</u>
0미터 이내의 구역(일반 공	0미터
중의 통행·이용 등에 제공된	
구역을 말한다)	
2.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른 어	2
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	
터 <u>10미터</u> 이내의 구역(일반	<u>50미터</u>
공중의 통행·이용 등에 제공	
된 구역을 말한다)	
⑦ ~ ⑨ (생 략)	⑦ ~ ⑨ (현행과 같음)